

탄핵제도 전문가 초청 토론회

2023.03.29(수)
오후 2:00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회의실
(의원회관 306호)

발제 전학선 한국외대 교수

토론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유승익 한동대 교수,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 정한중 한국외대 교수

주최 | 국회의원 안민석, 김민석, 박주민, 이재정, 강민정, 김승원, 김용민,
민형배, 양이원영, 유정주, 최강욱, 황운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인권연대

탄핵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학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탄핵심판제도의 의의

- ▷ 탄핵심판제도는 고위직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제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그 법적인 책임을 특히 헌법이 정하는 특별한 소추절차에 따라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

▶ 탄핵심판제도의 연혁

- ▷ 1948년 헌법부터 존재

1948년 헌법

제46조 대통령, 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심계원장, 법관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의 그 직무수행에 관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결의할 수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의 발의는 의원 50인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하며 그 결의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7조 탄핵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법률로써 탄핵재판소를 설치한다.

탄핵재판소는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관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된다. 단,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한다.

탄핵판결은 심판관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단,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현행 헌법

현행 헌법

제65조 ①대통령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법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감사원장 ·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111조 ①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②~④ 생략

▷ 국회법 제130조 내지 제134조

▷ 헌법재판소법 제48조 내지 제54조

▶ 탄핵사건 통계

발의일자	대상자	직위	국회표결결과	헌법재판소 결정
1985년 10월 18일	유태홍	대법원장	부결 (재적:275, 가:95, 부:146, 기권:5, 무 효:1)	
1994년 12월 16일	김도연	검찰총장	부결 (재적:299, 가:88, 부:158, 기권:1, 무 효:2)	
1998년 5월 26일	김태정	검찰총장	폐기	
1999년 2월 4일	김태정	검찰총장	부결 (재적:297, 가:145, 부:140, 기권:2, 무 효:4)	
1999년 8월 26일	박순용	검찰총장	폐기	
2000년 10월 13일	박순용	검찰총장	폐기	
2000년 10월 13일	신승남	대검찰청 차 장검사	폐기	
2001년 12월 5일	신승남	검찰총장	폐기	
2004년 3월 9일	노무현	대통령	가결 (재적:272, 가:193, 부:2)	기각
2007년 12월 10일	최재경	검사	폐기	
2007년 12월 10일	김기동	검사	폐기	
2007년 12월 10일	김홍일	검사	폐기	
2009년 11월 6일	신영철	대법관	폐기	
2015년 9월 14일	정종섭	행정자치부장 관	폐기	
2016년 12월 3일	박근혜	대통령	가결 (재적:300, 가:234, 부:56, 기권:2, 무효:7)	인용 (인용:8)
2019년 12월 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 획재정부장관	폐기	
2019년 12월 27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	폐기	

		획재정부장관		
2020년 1월 1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폐기	
2020년 1월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폐기	
2020년 7월 20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부결 (재적:300, 가:109, 부:179, 무효:4)	
2021년 2월 1일	임성근	법관	가결 (재적:300, 가:179, 부:102, 기권:3, 무효:4)	각하 (인용:3, 각하:5, 심판절차종료:1)
2023년 2월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가결 (재적:299, 가:179, 부:109, 무효:5)	

▶ 탄핵 대상자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헌법 제65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8조)

●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

▷ 검찰청법(제37조)에 의한 검사

▷ 선거관리위원회법(제9조)에 의한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의한 특별검사 및 특별검사보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찰청장

(제11조), 국가수사본부장(제16조)

-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6조⑤)에 의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 차장 · 수사처검사

▶ 탄핵사유

-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 ▷ ‘직무’ 라 함은 법제상 소관 직무의 고유업무 및 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
 - ▷ 탄핵대상자가 다른 공직을 거쳐 현 공직에 취임한 경우 전직과 현직 공히 소추대상의 직이라면 전직 시의 위법행위는 탄핵사유에 포함

-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의 의미
 - ▷ ‘헌법’ 이라 함은 명문의 헌법규정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형성되어 확립된 불문헌법도 포함
 - ▷ ‘법률’ 도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그리고 긴급명령 · 긴급재정경제명령 등도 포함

- ▷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국한되기 때문에 위법차원이 아닌 부당한 정책결정행위나 정치적 무능력으로 야기되는 행위 등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음

▶ 탄핵소추발의

- ▷ 소추기관은 국회
- ▷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만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헌법 제65조 제2항)
- ▷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피소추자의 성명·지위와 탄핵소추의 사유·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함(국회법 제130조 제3항).
- ▷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받은 사건은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하여(헌법재판소법 제39조) 국회에서 다시 소추발의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탄핵소추의결

- ▷ 탄핵소추의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함.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함(헌법 제65조 제2항).
- ▷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음

- ▷ 본회의가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봄
- ▷ 법제사법위원회가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함
- ▷ 위의 조사에 관하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
- ▷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하여야 함
- ▷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대상자의 성명·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로 하여야 함
- ▷ 탄핵소추가 의결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소추의결서正本(正本)을 법제사법위원장인 소추위원에게 송달하고, 그 등본(謄本)을 헌법재판소, 소추된 사람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송달
- ▷ 현행법은 탄핵사유의 시효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회는 탄핵대상자가 탄핵대상 공직에 있는 한 언제든지 탄핵소추를 발의할 수 있음
- ▷ 탄핵소추의결은 개별사유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표결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바람직하나, 우리 국회법상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여러 소추사유들을 하나의 안건으로 표결할 것인지의 여부는 기본적으로 표결할 안건의 제목설정권을 가진 국회의장에게 달려 있음

▶ 탄핵소추의 효과

- ▷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음
- ▷ 권한행사정지의 시점은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의 시점이 아니라 소추의결서가 피소추자에게 송달된 때
- ▷ 권한행사정지의 효력이 종료하는 시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대한 종국결정의 송달 시가 아니라 선고 시임

▶ 탄핵심판의 개시

- ▷ 탄핵심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헌법재판소법 제49조)
- ▷ 헌법재판소가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본을 피소추자에게 송달(헌법재판소법 제27조).
- ▷ 송달을 받은 피소추자는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음(헌법재판소법 제29조)
- ▷ 탄핵심판이 청구된 후 국회의 입법기가 종료하고 선거에 의해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탄핵심판청구는 유효
- ▷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 이 경우 새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된 사람이 심판절차를 수계. 다만, 소추위원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탄핵심판절차는 중단되지 아니함(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제58조).

▶ 탄핵심판 결정

-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
- ▷ 탄핵심판청구가 이유있는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당해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
- ▷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중 임기만료로 피청구인이 법관의 직에서 퇴직한 경우 ‘각하’ (헌재 2021. 10. 28. 2021헌나1)
- ▷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범위반이 있는 경우
- ▷ ‘범위반의 중대성’이란 한편으로는 범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결정
- ▷ 피청구인이 결정선고 전에 당해 공직에서 파면된 때에는 심판청구를 기각(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2항).

▶ 탄핵심판결정의 효력

- ▷ 탄핵심판결정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탄핵심판에 관하여 별도의 이의절차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결정선고 시부터 발생
- ▷ 피청구인은 탄핵결정의 선고에 의하여 그 공직에서 파면됨.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헌법 제65조, 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1항)
- ▷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자는 탄핵결정의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음(헌법재판소법 제54조 제2항)

- ▷ 파면된 자는 특정 전문자격 취득에 있어 일정기간 제한을 받음(변호사법 제5조, 변리사법 제4조, 세무사법 제4조, 공인회계사법 제4조, 공증인법 제13조 참조).
- ▷ 변호사-5년, 변리사-무제한, 세무사-3년, 공인회계사-5년, 공증인-5년
- ▷ 군사법원법상의 군판사는 탄핵대상이 아님

▶ 탄핵심판제도의 쟁점

- 탄핵대상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닌지....

▷ 판사의 수 - 3,214명(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제1조)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제1조(각급 법원 판사의 수) 「법원조직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른 각급 법원 판사의 수는 3,214명으로 한다.

▷ 검사의 수 - 2,292명(검사정원법 제1조)

검사정원법
제1조(검사의 정원) 「검찰청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정원을 2,292명으로 한다.

▷ 탄핵대상자 수 - 5,500명 이상

▷ 판사, 검사 등을 모두 탄핵대상자에 포함시켜 탄핵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짐

- ▷ 판사나 검사 등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는 경우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지 않았음
- ▷ 검사장 또는 법원장 급 이상으로 축소할 필요성이 있음
- ▷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도 탄핵 대상자인데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

- 탄핵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의 사면권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
- ▷ 부정설과 긍정설 대립
- ▷ 탄핵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긍정설(사면권행사 제한)이 타당

- 탄핵소추 후 헌법재판소 결정 전에 탄핵대상자가 사직할 수 있는 지?
- ▷ 국회법 제134조 제2항에 의하여 사직할 수 없는 것이 원칙

국회법

제134조(소추의결서의 송달과 효과) ② 소추의결서가 송달되었을 때에는 소추된 사람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소추된 사람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소추된 사람을 해임할 수 없다.

- ▷ 그러나 탄핵대상자 중 대통령만이 선출직 공무원
- ▷ 따라서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됨

- ▷ 대통령은 사직원을 접수할 자가 없기 때문에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아 탄핵소추 후에도 사직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음
- ▷ 그러나 탄핵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국회법 제134조 제2항은 대통령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제도의 취지에 부합함

●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겸직자에 대한 탄핵

- ▷ 국회의원은 탄핵대상자가 아니므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하는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은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에 대한 탄핵에 그침
- ▷ 그러나 헌법재판소법에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음

헌법재판소법

제54조(결정의 효력) ②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

- ▷ 이 때 공무원에는 선출직 공무원도 포함되므로, 해당 공무원은 피선거권이 없게 됨
- ▷ 그런데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하도록 되어 있음

국회법

제136조(퇴직) ② 의원이 법률에 규정된 피선거권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퇴직한다.

▷ 따라서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을 겸하는 국회의원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에 대하여 탄핵당하면 국회의원 직에서 퇴직하여야 하는 것임

● 탄핵소수 후 국회가 탄핵소추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 탄핵소추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견해와 철회할 수 없다는 견해 대립가능

▷ 철회할 수 있다는 견해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준용규정을 통하여 철회 인정

헌법재판소법

제40조(준용규정) ①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의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② 제1항 후단의 경우에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 또는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에 저촉될 때에는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철회할 수 없다는 견해가 타당. 헌법과 헌법재판소법, 국회법 어디에도 철회에 관한 규정 없음.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준용규정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준용하는 것이므로 준용하지 않아도 됨

▷ 철회를 인정하면 철회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만약 철회를 인정한다면 국회의 탄핵소추 철회를 위한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문제됨

- ▷ 예를 들어 대통령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1을 초과하는 동의만 있으면 철회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음. 이는 대통령의 경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소추를 할 수 있으므로, 3분의 1 이상의 국회의원이 탄핵소추를 반대하면 탄핵소추를 할 수 없다는 것에 근거를 둠
- ▷ 또한 탄핵소추 의결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소추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음. 이는 탄핵소추 의결종족수와 동일하게 하는 것임
- ▷ 그러나 탄핵소추 철회에 관한 규정이 어디에도 없으므로, 만약 탄핵소추 철회를 인정한다면 헌법 제49조가 적용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 탄핵대상자가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지 않은 경우 국회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 ▷ 국회의 탄핵소추권은 국회의 재량권으로 탄핵소추를 할지 여부는 국회에 달려 있음. 아무리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어도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지 않으면 탄핵심판을 할 수 없고, 국회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음. 다만 국회는 정치적 책임을 질뿐임

- 권한대행자도 탄핵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탄핵대상자가 궐위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권한대행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권한대행자도 탄핵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됨
 - ▷ 이는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음
 - ▷ 먼저 대통령이 궐위되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경우와 같이 권한대행도 탄핵대상자인 경우에는 권한대행자의 행위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면 권한대행의 지위뿐만이 아니라 국무총리직에서 파면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는 국무총리도 탄핵대상자이고 국무총리의 권한 가운데 하나가 권한대행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임
 - ▷ 두 번째는 법무부장관이 궐위되어 법무부차관이 권한대행을 하는 경우와 같이 권한대행자가 탄핵대상자가 아닌 경우, 권한대행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차관을 탄핵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 ▷ 이 경우, 권한대행자의 지위에서는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지만, 본래의 공직에서의 행위는 탄핵대상이 되는 행위는 아님
 - ▷ 그러나 이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못함
 - ▷ 만약 권한대행의 지위에 대하여 탄핵이 가능하다면, 차관의 직을 유지 못함. 왜냐하면 탄핵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기 때문임

-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 ▷ 대통령은 다른 탄핵대상자보다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가중되어 있

음.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예를 들어 국무총리)을 탄핵하는 경우,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국회 재적의원 가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일반 의결정족수(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가 적용되는지 불명확함

- ▷ 대통령 권한대행도 대통령의 지위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 ▷ 그러나 권한대행의 권한행사도 본래의 직(예를 들어 국무총리)에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일반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헌법재판소 재판관 탄핵

- ▷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탄핵대상인바,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됨
- ▷ 현행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한 탄핵심판도 헌법재판소에서 담당함
- ▷ 다만, 탄핵소추된 재판관은 직무가 정지되므로 탄핵심판에 관여할 수 없음.
- ▷ 그러나 이는 재판관에게 유리하게 작용되는 결과를 낳음. 왜냐하면 재판관이 8명이 되어도 탄핵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임
- ▷ 3명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소추되면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결정도 할 수 없음

- 탄핵심판에서도 변호가 강제주의가 적용되는지 여부
 - ▷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함.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 탄핵심판에서 피청구인을 사인으로 보는 경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나, 탄핵심판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